

<입법안>

KDS 41 19 00 : 2021,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

2.조사 및 계획

2.1일반사항

지반조사는 2.2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고, 보고서는 2.6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. 감독관이 요구하거나 현장시험, 실내시험 또는 공학적계산을 포함한 지반조사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(토질및기초)가 수행하여야 한다.

<의견>

2.1일반사항 내용중 ‘~ 지반조사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(토질및기초)’를 「~지반조사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(토질·지질)」로 아래 법령에 의거하여 수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
1.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(엔지니어링기술)에 의한 (별표1)에 의거하면 「기술부문(토목부문) - 전문분야(토질·지질)」로 분류되어 있음
2.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(건설기술인의 범위)는 (별표1)에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를 「직무분야(토목) - 전문분야(토질·지질)」로 규정되어 있음